

일본의 채무자면책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1. 의 의

파산법에 있어서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서 만족(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채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인은 파산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파산면책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변제에 충당하고, 채권·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것을 초과해서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해서 남은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통해서 최대한의 변제를 한다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파산채권자에게 있어서도 파산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다는 상황 하에서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채권의 회수를 할 만한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처럼 파산절차를 계기로 하여 파산자에게 있어서는 갹생을 돕기 위해서, 파산채권자에게 있어

서는 절차를 통해서 확실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산면책제도의 기능이다. 일본에서 채무자면책과 관련해서는 파산법과 민사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면책불허가사유

파산자로부터 적법한 면책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책허가를 해야 한다. 즉, 적법한 면책허가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일본의 파산법은 제252조에서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가치의 부당한 감소행위(제252조 제1항 제1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거나 또는 속해야 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그 외 파산재단의 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¹⁾

2) 파산절차개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불이익처분 등(제2호)

파산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에 의해서 상품을 매입해서 이것을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

3) 비의무행위에 대한 불공정한 변제 등(제3호)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당해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혹은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4)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 등(제4호)

낭비 또는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함으로써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5) 詐術을 이용한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취득(제5호)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날의 1년 전부터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 내에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

음을 알면서 당해 사실이 없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詐術을 이용해서 신용거래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6) 장부의 인멸·위조 등(제6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7) 허위의 채무자명부의 제출(제7호)

허위의 채무자명부를 제출하는 행위

8) 법원조사에서의 허위설명행위(제8호)

파산절차 중 법원이 수행하는 조사에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행위

9) 부정한 수단에 의한 파산관재인 등의 직무방해(제9호)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재산관재인 대리 또는 보전관리인 대리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10) 2회 이상 면책의 제한(제10호)

- ① 이전의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
- ② 민사재생법(民事再生法) 상의 급여소득자 등재생(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을 통해 재생계획이 수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생계획인가



1) 파산법은 이러한 행위의 대부분을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확정일, ③ 소규모개인재생과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의 Hardship 면제(재생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의 법원의 면책 결정/민사재생법 제235조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면책결정에 관련한 재생계획인가결정 확정일부터 각각 7년 이내에 면책허가를 신청한 경우

11) 파산법 상의 의무위반(제11호)

파산자의 설명의무(파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중요재산개시의무(파산법 제41조), 면책조사협력의무(파산법 제250조 제2항) 등의 의무, 그 외 파산법에 정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

3. 재량면책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면책허가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구파산법 하에서는 명문이 규정을 두지 않고 운용되어 왔으나, 신파산법에서는 제252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이른 경우, 그 외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책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비면책채권

(1) 의의와 구파산법과의 차이

1) 파산법의 규정

파산자(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면책채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파산법(제253조)에서 그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파산법 제253조). 그러나 파산법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채권(이른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비면책채권에 관해서 일본의 파산법은 구법 제366조의 12와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신파산법에서는 비면책채권의 유형을 확장해서 ① 파산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시킨 생명 또는 신체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②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청구권이라는 두가지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했다(파산법 제253조 제1항 제3호·제4호). 또한 詐術에 관련한 채권에 대해서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하고 있다(파산법 제252조 제1항 제5호).

2) 파산법 이외의 규정

비면책채권제도는 파산법 외에도 민사재생법 제229조 제3항(소규모개인재생)과 제244조(급여소득자 등 재생)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민사재생법 제229조 제3항

민사재생법 제229조 제3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재생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재생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 ② 재생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가한 사람의 인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전 호에 규정한 청구권을 제외한다)
- ③ 다음에 규정하는 의무에 관계하는 청구권
 - i. 민법 제7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협력 및 부조의무
 - ii. 민법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에서 발생한 비용분담의무
 - iii.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감호에 관한 의무
 - iv. i ~ iii까지 규정된 의무에 유사한 의무로 계약에 근거한 것

— 민사재생법 제244조

제229조를 급여소득자 등 재생절차에서도 준용한다.

(2) 비면책채권의 유형

일본의 파산법 제253조에서는 “면책허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하지만, 다만 다음에 규정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면책채권의 각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파산법 제253조 제1항 제1호~제7호).

1) 조세 등의 청구권(제1호)

조세 등의 국고수입확보를 위한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다.

2)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제2호)

피해자보호의 관점과 이러한 종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다.

3) 파산자가 고의·중과실로 가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제3호)

사람의 생명·신체라는 법익으로서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피해자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신파산법에서 신설되었다.

4)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청구권(제4호)

권리의 성질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신파산법에서 신설되었다. ① 부부간의 협력 및 부조의

무, ② 혼인에서 발생한 비용분담의무, ③ 자녀의 감호의무, ④ 부양의무에 관련한 청구권과 ①에서 ④의 의무와 유사한 의무로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파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구파산법 하에서도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신파산법에서는 파산절차개시까지 기존에 발생하고 지급되지 않은 것이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청구권은 구파산법에서는 면제의 대상이 되었었다.

5) 고용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사용인의 청구권 및 보관금반환청구권(제5호)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면책채권이 되었으며, 법인은 면책제도가 없기 때문에 파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구파산법에서는 신원보증금도 비면책채권이 었지만, 신법에서는 삭제되었다.

6)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청구권(제6호)

파산자는 면책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파산채권자에게는 면책에 대한 의견진술기간의 통지가 되지 않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이 된다. 다만,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개시결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참가의

기회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알면서도”는 파산자의 고의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파산자가 과실에 의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 되지만(동경지방법원 2002년 2월27일 판결), 당해 파산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된다(고배지방법원 1989년 9월7일 판결, 동경지방법원 2003년 6월 24일 판결).

7) 벌금 등의 청구권(제7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또는 과료의 청구권은 열후적 파산채권²⁾이 되지만, 파산자본인에 대한 제재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비면책채권이 된다.

5. 비면책채권과 면책불허가사유와의 관계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양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정검토사항에서는 조건부면책과 일부면책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었지만, 개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김 경 석

(외국법제 조사원)



2) 우월적 파산채권 및 일반 파산채권을 모두 만족한 후에 비로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파산법 제99조 1항).